의안번호	2209682
의 뢰 인	박상혁의원
회 답 일	2025.5.16.
추계번호	24D2186

공정배상기금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기금의 설치)	정부는 금융상품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	의무규정
	안 제4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의 일부 - 기금운용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	의무규정
	안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된 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의무규정
2	안 제7조 (공정배상기금 심의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되(제1항),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금융 관련 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기금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4조(기금의 조성)	
	안 제5조(기금의 용도)	
2	안 제7조(공정배상기금심의회)	

2. 상세 사유

❑ 공정배상기금의 설치·조성·용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제정안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공시위반, 불공정거래행위, 위법한 공매도로 인하여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해당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정배상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정안에 따라 공정배상기금의 재원이 되는 과징금은 현재 일반회계에 수납되고 있고, 그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불완전판매로 인한 과징금 부과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부과건수	–	–	–	1	–
부과액	–	–	–	974	–
수입액	–	–	–	974	–

자료: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3] 공시위반·불공정거래행위·위법한 공매도로 인한 과징금 부과 현황: 2020~2024년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부과	수입	부과	수입	부과	수입	부과	수입	부과
공시위반	건수	37	45	43	45	49	51	46	54	52	70
	금액	6,055	7,788	1,330	1,496	8,176	8,232	12,976	13,521	4,218	7,068
불공정거래행위	건수	4	4	7	10	2	5	10	10	15	24
	금액	205	205	644	997	784	955	14,049	14,049	238	648
위법한 공매도	건수	–	–	–	–	–	–	34	35	15	16
	금액	–	–	–	–	–	–	35,901	35,906	46,301	46,337
합계	건수	41	49	50	55	51	56	90	99	82	110
	금액	6,260	7,992	1,975	2,493	8,960	9,816	62,925	63,475	50,757	54,052

자료: 금융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제정안은 이러한 과징금을 공정배상기금에 수납하도록 하고, 해당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금 지급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가 예상됨

○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의 재정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사실의 입증 여부, 피해 투자자 인원, 손해액 규모, 지원금 지급의 기준 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함

-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손해의 입증 여부, 손해의 구체적인 규모는 개별투자자가 위법행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제정안에 따른 지원금의 규모를 파악하기 곤란함

○ 따라서 현시점에서 제정안에 따른 공정배상기금의 지출(지원금 지급)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공정배상기금심의회(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공정배상기금심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민간위원 회의참석수당 및 인쇄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심의회의 정원을 7명으로 하고 있어, 공정배상기금심의회의 추가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경우, 2025년 예산 기준 회의수당, 인쇄비 등으로 5백만원(2025년 기준)이 편성되어 있음

○ 다만,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투자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회의 회의개최 횟수를 현시점에서 합리적 추정할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